

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•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‘○’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미추홀구청 건축과		심의일자	2025. 10. 21.	
건축종별	[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√] 기타				
건축주	인천도시공사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				
	지번	272번지	관련지번		
	대지면적	4336.2 m²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제2종일반주거지역, 과밀억제권역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796.4 m²	건폐율	18.37 %	층수 지하 : 지상2층
	주용도:	주차장	구조:	일반철골구조	건축물 동수 1개동
	최고높이	7 m	용적률	36.73 %	연면적 합계 1,592.8 m²
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
	(해체)분야	○ 철골부재 해체 시 과도한 횡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 할 것 (압쇄 공법 적용 시) ○ 건축물 기초 해체 시 인접한 옹벽 기초와 간섭여부를 확인할 것 ○ 기존 L형 옹벽과 신축건축물 지하 외벽과의 간섭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해체계획 순서를 명확히 제시할 것 ○ 제시한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내용을 준수하여 공사할 것 ○ 확대된 가설울타리 계획선은 보도블록 안측으로 이전하여 설치 할 것 ○ 남측 건축물 상가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것 ○ 추후 공사 시 버스정류장과 간섭이 우려되므로 정류장 이설에 대한 검토 추가할 것
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√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
	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킴으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

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•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‘○’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미추홀구청 건축과		심의일자	2025. 10. 21.	
건축종별	[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☒] 기타				
건축주	류재영 외 1인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				
	지번	1315-4번지	관련지번		
	대지면적	- m ²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제2종일반주거지역, 과밀억제권역, 광로3류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394.32 m ²	건폐율	- %	층수 지하 : 지하1층, 지상4층
	주용도:	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	구조:	철근콘크리트조	건축물 동수 1개동
	최고높이	15 m	용적률	- %	연면적 합계 1,898.66 m ²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
	(해체)분야	○ 구조안전진단보고서 작성 시 콘크리트 비파괴조사는 구조체에서 실시한 것으로 수정할 것 ○ 4번 사전검토의견 - 창호 전면을 막을 수 있게 합판 적용 위치를 보완할 것 ○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검토내용을 준수하여 공사할 것 ○ 엘리베이터 설치 위치의 현 기초 상태를 필히 확인 후 구조 검토할 것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☒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 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킴으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

■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[별지 제2호서식]

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•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‘○’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미추홀구청 건축과		심의일자	2025. 10. 21.	
건축종별	[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√] 기타				
건축주	디엘건설주식회사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의동				
	지번	33-88 외 3필지	관련지번		
	대지면적	- m²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준주거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(송의3주택재개발)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305.28 m²	건폐율	- %	층수 지하 : 지상2층
	주용도: 가설건축물(현장사무실)		구조:	경량철골구조	건축물 동수 1개동
	최고높이	7 m	용적률	- %	연면적 합계 610.56 m²
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
	(해 체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검토내용을 준수하여 공사할 것

심의결과	[√] 원안 의결 [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			
	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			
	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킴으로 의결			

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